

인천남항배후단지

아암물류2단지 2단계 입주 안내



수도권 전진기지

- (인천신항) 20분 소요 (12km)
- (인천공항) 30분 소요 (31km)
- (경인고속) 20분 소요
- (외곽순환+영동고속) 30분 소요



글로벌 물류 허브

구분	주당 기항차수	항로수
중 국	51.75	29
폴건선	25.75	19
카페리	26	10
중국 · 대만 · 홍콩	1	1
중국 · 일본	1	1
일 본	3	3
동남아	35	35
미 주	1	1
합 계	92.75	70



부지 공급

(물류시설용지 589,182㎡)

- 물류환경에 따라 면적 분할·결합 공급으로 변경 가능

임대면적(단위 : ㎡)

녹 지

도 로



아암물류2단지 2단계 입주안내



입주 자격

- 「항만법」 제69조 제1항 1호 부터 5호 해당기업



임대료

- 1차년도('26년 기준) **2,037원/월·㎡**
- **1년 단위** 부과, 매년 **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** 반영 갱신
(7개년 중 최고·최저치를 제외한 5개년 평균)



임대기간

- **30년**(사업실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최대 50년까지 사용 가능)



사업조건

- 총 19개 필지에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을 설치·운영
- 사업추진계약 체결 후 6개월 내 인허가 승인(건축허가 등) 득



사업자 선정

- 공개경쟁, 사업계획서 평가 방식

아암물류2단지 2단계 공고일정(예정)

※ 관련 일정은 공사사정 및 물류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

입찰방법

공고명

인천남항 아암물류2단지 2단계 복합물류 부지 입주기업 선정 공고

홈페이지 www.icpa.or.kr → 입찰정보 바로가기 → 항만 입찰정보 안내

제출서류

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(사업참여의향서 및 사업계획서) 작성 제출

※ 제출기한내 직접 방문제출(우편 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.)

제출처

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인천항만공사

문의

인천항만공사 물류사업실 TEL 032.890.8262 FAX 032.726.0318 E-mail syhong@icpa.or.kr

제69조(입주자격)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주할 수 있다. 다만,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(「산업발전법」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제2호·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물류의 원활화 및 물동량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2호·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8.>

【시행령】 제70조 제1항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입주계약일부터 3년을 말한다.

1. 관할 항만을 이용하여 반입·반출되는 화물을 **하역·운송·유통·판매·보관·전시하는 사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사업**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

【시행령】 제70조 제2항

- | | |
|--|---|
| 1. 국제운송주선·국제선박거래, 포장·보수·가공 또는 조립 사업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 | 2. 선박(선박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포함한다)의 수리·정비 및 조립 사업 등 국제물류 관련 사업 |
| 3. 연료, 식수 및 선식(船食) 등 선박 용품의 공급업 | 4. 물류시설 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|

2. 무역항에 입항·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화물의 **제조업**을 영위하는 자로서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(공고 직전 3년중 20% 연속 1년)을 충족하는 자

【시행령】 제70조 제3항

③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.

2의2. 관할 항만에 입항·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**국내복귀기업**(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

【시행령】 제70조 제4항

- ④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제조업과 제6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
- |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⑥ 1. 전자상거래업 | 2.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| 3. 전기통신업 | 4.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|
| 5. 정보서비스업 | 6. 연구개발업 | 7.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| |

3. 관할 항만에 입항·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**제조업**을 하려는 **외국인투자기업**으로서 외국인투자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

【시행령】 제70조 제5항

⑤ 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서 “외국인투자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”란 해당 외국인투자가 「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」 제2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

【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】

② 법 제2조 제1항 제4호각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(이하 “주식등”이라 한다)의 일부 양도나 감자(減資)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자로 본다. <개정 2010. 10. 5., 2016. 7. 28., 2020. 8. 5.>

1.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(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
2.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(이사, 대표이사,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,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것

4.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출입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(공고 직전 3년중 5% 연속 1년)을 충족하는 자

【시행령】 제70조 제5항

⑥ 법 제69조 제1항 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출입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. <개정 2021. 5. 25.>

- | 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전자상거래업 | 2.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| 3. 전기통신업 | 4.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|
| 5. 정보서비스업 | 6. 연구개발업 | 7.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| |

5. 관할 항만에 입항·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**도매업**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(공고 직전 3년 중 50% 연속 1년)을 충족하는 자

【시행령】 제70조 제7항

⑦ 법 제69조제1항제5호에서 “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”란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거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.

인천항 현황도



북항

내항

연안항

남항

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

신항

북 항 (총17선석)

구분	선석수	합안능력	하역능력	선석길이 (m)	아작장 (m²)
동원로엑스	3	50천톤급×3	2,520천톤	840	184천m²
동방	3	50천톤급×2 20천톤급×1	2,330천톤	770	110천m²
CJ 대한물류	2	20천톤급×2	1,460천톤	420	90천m²
북항다목적부두	1	20천톤급×1	660천톤	280	49천m²
다주공업단지	3	20천톤급×3	1,710천톤	700	94천m²
아인테비	2	20천톤급×2	920천톤	450	48천m²
현대제철	2	50천톤급×2	3,100천톤	560	58천m²
동국제강	1	50천톤급×1	1,200천톤	270	25천m²

북항 배후단지 북측(173천m²)

복합물류 및 제조시설	125천m²
공공시설(도로, 녹지, 군부대 등)	48천m²

북항 배후단지 남측(562천m²)

복합물류 및 제조시설	287천m²
업무·편의시설	43천m²
공공시설(도로, 녹지, 군부대 등)	232천m²

내 항 (총43선석)

구분	선석수	하역능력	선석길이 (m)	아작장 (m²)
1부두	10	—	1,799	133천m²
2부두	7	5,380천톤	1,278	73천m²
3부두	7	4,340천톤	1,250	99천m²
4부두	5	3,860천톤	1,160	243천m²
5부두	4	8,530천톤	1,150	174천m²
6부두	4	3,040천톤	950	110천m²
7부두	4	6,520천톤	1,216	—
8부두	2	—	602	73천m²

남 항 (총 4선석)

구분	선석수	합안능력	하역능력	선석길이 (m)	아작장 (m²)	CFS
ICT	2	3천TEU급×2	552천TEU	600	196천m²	2동1천m²
EICT	1	2천TEU급×1	210천TEU	259	95천m²	1동600m²
석탄부두	1	100천톤급×1	3,510천톤	240	92천m²	—

아암물류 1단지 (973천m²)

복합물류 및 제조시설	597천m²
업무·편의시설	54천m²
공공시설(도로, 녹지, 군부대 등)	321천m²

아암물류 2단지 (2,556천m²)

복합물류 및 제조시설	1,151천m²
업무·편의시설	33천m²
공공시설(도로, 녹지, 군부대 등)	1,372천m²

국제여객부두·크루즈부두

구분	선석수	합안능력 (GT)	선석길이 (m)	비고
국제여객	6	30,000	1,246	카페라 전용 5선석, 카페라 및 크루즈 공용 1선석
크루즈	1	50,000	300	카페라 및 크루즈 전용
크루즈	1	225,000	430	크루즈 전용

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

구분	면적(m²)
한계	1,138천m²
항만시설	396천m²
복합지원용지	428천m²
공공시설	314천m²

인천 신항 개발 계획

개발단계	총계	1단계	1~2단계	1~3단계
운행사	—	HLJT	SNCT	—
부두길이(m)	3,700	800	800	1,050, 350, 700
CFS	1동 5,4천m²	1동 6천m²	—	—
CY면적(천m²)	2,220	480	480	630, 210, 420
하역능력(TEU)	492만	106만	110만	138만, 46만, 92만
개발시기	—	420m(16,1,1) 410m(15,1) 202/년	창대	향대
		380m(17,1,1) 380m(17,1,1)	(예정)	

신항 배후단지 개발 계획

개발단계	총계	1단계 (2,140천m²)	1~2단계
구역	—	1구역	2구역, 3구역
면적(천m²)	2,550	660	940, 540, 410
준공시기	2020년	2024년	민자개발예정, 민자개발예정

※ 수면적 318km², 접안능력 125선석, 안벽길이 26km, 하역능력 (벌크 86백만RT, 컨테이너 292만TEU)